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02087     |
| 의 퇴 인 | 박균택의원       |
| 회 답 일 | 2024.07.15. |
| 추계번호  | 24D1881     |

#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5조제9호의2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 신설 |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, 특별시·광역시·도에 근무하는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고 마약류 단속 관련 직무범위를 규정 | 의무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5조제9호의2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 신설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□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공무원의 종류 및 직무 범위 추가  
(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)

○ 개정안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종류와 직무가 추가되는 경우 수사 준칙 준수를 위해 마약류 단속과 관련한 수사상황 통지, 임의 또는 강제수사, 수사 직무 수행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－ 「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」(법무부령)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수사사건의 공개금지(제5조), 수사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통지(제9조), 사건기록의 관리(제20조), 수사의 개시(제2절), 수사사무의 보고(제3절), 수사지휘(제4절), 임의수사(제5절), 강제수사(제6절) 등 직무수행 준칙을 준수하여야 함

-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, 의약품·화장품·의료기기·위생용품 단속사무로 이미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공무원이 있으며 특정업무경비로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
- 다만,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, 소속 관서의 제청 및 검사장 지명 비율, 사법경찰관리마약류 단속과 관련 수사상황 통지 건수의 증가량, 임의 또는 강제수사의 증가 건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,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마약기획관실에 총 37명의 공무원이 재직 중이고, 검찰청의 「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」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은 27,611명이 검거되었고 마약류 압수량은 998kg

### 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이미연 | 김안나 |

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|
| 이미연 | 02-6788-4661 | mylee@nabo.go.kr |